

사건번호	2021허34898	사건명	취소결정(특)
심판번호	2020소12	심판결과	인용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블라인드 밸브
선고일	2022. 10. 20.	선고결과	기각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이 사건 제1항, 제2항 발명은 각각 선행발명 1, 3에 의하여,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 또는 선행발명 1, 3, 4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선행발명 1, 3, 5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 의해 취소결정 되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 판시 요지

- (1)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살펴보건대 선행발명 1의 경우 이 사건 제1항 발명과는 달리 개방구와 폐쇄구가 하나의 밸브 플레이트에 형성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는 차이점(이하 ‘차이점 1’)이 있다. 그런데 블라인드 밸브 혹은 고글 밸브에 있어서 하나의 밸브 플레이트에 개방구와 폐쇄구를 모두 구비하는 구성은 해당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술에 불과한 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2016. 11.경 발간한 ‘맹판 설치 및 제거에 관한 기술지침’에서도 ‘맹판(Blind)’의 한 쪽은 구멍이 나 있고 다른 한 쪽은 막혀 있는 상태의 ‘스펙터클 블라인드(Spectacle Blind)’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기도 한 점, 선행발명 1의 명세서에서의 도면에 따르면 선행발명 1의 밸브 플레이트에는 개구와 폐구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나아가 선행발명 3에도 통공링(1)과 블라인드 홀 링(5)을 하나의 게이트 프레임(11)에 형성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 점,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은 모두 배관과 연결되어 유체의 흐름을 제어하는 ‘고글밸브’ 또는 ‘블라인드 홀 타입 게이트 밸브’에 관한 것으로서 기술분야나 기본적인 기술 사상이 동일 내지 유사하고, 달리 선행발명 1과 선행발명 3의 결합이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로부터 또는 기술분야를 같이하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함으로써 차이점 1을 쉽게 극복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차이점 2에 대해 살펴본다. 차이점 2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후면 플레이트(130)만 움직이는 반면 선행발명 1은 좌측, 우측밸브몸체(7, 12)가 축방향으로 상대운동을 한다고 기재하고 있을 뿐 우측밸브몸체만 움직인다고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1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선행발명 1의 경우 터빈 박스는 좌측밸브몸체의 모서리에 설치되고 스크류는 터빈 박스와 고정 연결되며 너트는 우측밸브몸체에 고정되므로, 좌측밸브몸체에 고정된 스크류의 회전으로 우측밸브몸체에 고정된 너트에 구동력이 전달되어 우측밸브몸체가 이동하는 구조임을 알 수 있으므로 만일 선행발명 1에서 좌측밸브몸체가 고정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면 위와 같은 작동원리에 따라 우측밸브몸체가 이동할 것인바, 이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후면 플레이트가 이동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게 되고, 나아가 선행발명 1에는 좌측밸브몸체를 고정한

상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등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 (2) 이 사건 제2항 내지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2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면서 '전면 플레이트에 고정되고 상기 후면 플레이트를 관통하는 가이드축의 단부에 형성되는 나사부에 걸림장치가 결합되어 상기 후면 플레이트가 상기 블라인드 디스크로부터 이격되는 간격이 제한되는 것'을 부가 한정한 종속항이다. 그런데 선행발명 3의 명세서에 따르면 수축 한계 조절 나사(18) 및 위치 한계 조절 나사(20)는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걸림장치와 같은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 걸림장치를 이용하여 이동체의 변위를 제한하는 것 역시 해당 기술분야에서 주지관용기술에 불과하며, 제2항 발명의 기술적 구성 역시 주지관용 기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제2항 발명의 경우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3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 (3)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면서 '상기 블라인드 디스크는, 상기 바디의 상부에 구비되는 에어실린더에 연결되고 상기 에어실린더의 작동에 의해 수평방향으로 슬라이드 이동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블라인드 밸브'를 부가 한정한 종속항이고,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3항 발명의 에어실린더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선행발명 3 및 4의 명세서 기재에 따르면 '게이트 프레임을 개방상태와 폐쇄상태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는 실린더 형태의 셔터 개폐장치(2)'가 개시되어 있고, '리니어 고글 플레이트를 클램핑 위치와 개방위치 사이에서 이송될 수 있는 유압 실린더'가 개시되어 있으며 이는 밸브 개폐를 위해 블라인드 디스크(게이트 프레임, 고글 플레이트)를 이송시킨다는 점에서 그 작용 및 효과가 동일하다.
- (4)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에 대해 살펴보건대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인용하면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블라인드 디스크를 '상기 바디의 하부에 설치되고 회전체가 구비되는 슬라이드 레일에 지지되는 것'으로 부가 한정한 종속항이다. 그리고 선행발명 1에는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슬라이드 레일에 대응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대상 물체를 원활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마찰이 작용하는 부위를 윤활하거나 레일, 롤러 등을 활용하여 마찰을 줄이는 것은 해당 분야의 기술상식으로서 통상의 창작범위를 벗어난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선행발명 5의 명세서에서는 슬라이드 밸브에 있어서 슬라이드 판(14)을 이동시킬 때 사용되는 지지롤러(21, 22)가 개시되어 있기도 하다. 결국 이 사건 제1항 내지 제4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들로부터 그 각 진보성이 부정된다.

키워드: 특허, 취소결정, 진보성, 블라인드 밸브

사건번호	2021 허 6764	사건명	등록무효(실)
심판번호	2020 당 3889	심판결과	일부인용 (청구항 1: 인용, 청구항 2, 3: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피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실용신안	권리명칭	포장박스
선고일	2022. 10. 20.	선고결과	기각

1 항 등록고안이 선행고안 1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하고, 이에 따라 그 종속발명인 2 항, 3 항 등록고안도 선행고안 1, 2 에 의하여 당연히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 상대로 등록고안의 청구항 전항이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고안(선행고안 1)에 의하여 극히 쉽게 고안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고안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나, 청구항 2, 3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항 1은 인용, 청구항 2, 3은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선행고안 1의 해당 부분이 구성요소 3의 결합팁에 대응되는 그물망 연결돌기를 구비하고 덮개와 동일한 기능을 일부 수행하기는 하나, 이는 포장상자의 상측면을 형성하는 구성 즉, 포장상자의 '덮개'에 대응되는 구성이 아니라 덮개 위에 부가되어 '덮개에 생기는 틈이나 구멍을 막는 구성'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1항 등록고안은 '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에 관한 선행고안 1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1항 등록고안	선행고안 1(그물망을 포함하는 실시예)

사건번호	2022 허 1247	사건명	등록무효(실)
심판번호	2020 당 3889	심판결과	일부인용 (청구항 1: 인용, 청구항 2, 3: 기각)
원고	피심판청구인	피고	심판청구인
권리유형	실용신안	권리명칭	포장박스
선고일	2022. 10. 20.	선고결과	인용

1 항 등록고안이 선행고안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및 판시 요지

2021허6764 사건 참조

키워드: 실용신안, 등록무효, 포장박스, 포장상자, 농산물, 비닐포장, 결합홈, 결합팁, 덮개, 절단선, 진보성 인정

사건번호	2022 허 1711	사건명	거절결정(특)
심판번호	2021 원 3348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특허	권리명칭	보안 기능이 강화된 결제용 코드의 동적 표시 방법
선고일	2022. 10. 20.	선고결과	인용

출원발명 청구항 1 은 선행발명 1, 2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따라서 그 종속항 발명인 2 항 출원발명도 선행발명 1, 2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원고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은 청구항 1 내지 5가 인용발명 1, 2(선행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등의 거절이유를 적시한 의결제출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출원발명의 청구항 3, 4, 5를 삭제하고, 청구항 1, 2를 정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은 이와 같이 보정된 출원발명 청구항 1, 2가 여전히 인용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다시 보정하는 취지의 보정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은 다시 보정된 출원발명의 청구항 1, 2가 여전히 인용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다시 거절결정을 하였다. 이에 원고가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출원발명 청구항 1, 2는 비교대상발명 1, 2(선행발명 1, 2)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1항 출원발명의 전제부와 청구항 말미는 결제용 코드의 동적 표시 방법에 관한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차원 코드의 암호화 방법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제1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1은 차이가 있다(차이점 1). 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3과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전용 애플리케이션[결합코드 생성부]이 분할된 결제용 코드 블록들[이차원 코드 유닛]을 배치[랜덤한 위치로 재배열]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구성요소 3은 이와 같은 배치를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 1에서는 이와 대응하는 구성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이차원 코드 유닛을 랜덤한 위치로 재배열하여 결합 이차원 코드를 생성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2). 1항 구성발명 구성요소 4(사용자 단말기에 설치된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분할된 결제용 코드 블록들을 일시적으로 정상으로 배치하는 단계)에 대응하는 구성이 선행발명 1에는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차이점 3). 1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 5는 '일시적으로 블록이 정상으로 배치된 결제용 코드'를 인식하는 반면에, 선행발명 1의 대응구성요소는 암호화된 QR코드를 촬영한 다음 복호화된 QR코드를 생성하여 인식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차이가 있다(차이점 4).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 해 보면, 차이점 1 내지 4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를 결합하여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1) 1항 출원발명은 'QR코드의 이미지만 소유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불법도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 수단을 채용한 것이다. 반면 선행발명 1은 이차원코드를 적은 연산량으로 안전하게 암호화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선행발명 1에서 최초 생성된 이차원 코드를 분할하여 다수의 이차원 코드 유닛을 생성하는 것은 최초 생성된 이차원 코드를 암호화하

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점에서, 1항 출원발명에서 생성된 결제용 코드를 다수의 블록으로 분할하는 것과는 그 기술적 목적이 전혀 다르다. 또한, 선행발명 1은 코드 리더기, 즉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를 촬영한 사용자 단말기에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를 복호화할 수 있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 반면, 1항 출원발명은 통상적인 코드 리더기에 의하여 정상적인 코드가 인식된 다음에는 별도의 복호화 과정 없이 바로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양자는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

- 2) 선행발명 2가 1항 출원발명과 코드의 동적 표시방법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행발명 2는 동적 표시 대상 코드들의 암호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생성된 결제용 코드를 다수의 블록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블록을 지속적으로 변경하는 중에 일시적으로 블록들을 정상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통상적인 결제용 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1항 출원발명과는 구체적인 기술수단에서 차이가 있다.
- 3) 선행발명 1은 통상의 QR코드 판독방식(복호화 방식)으로는 정보를 판독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만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를 복호화하기만 하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판독할 수 있기 때문에 1항 출원발명과 같이 일시적으로 블록이 정상으로 배치된 결제용 코드를 표시할 필요성이 전혀 없다. 따라서 통상의 기술자로서는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n 개의 더미코드를 도입하거나 이를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와 함께 동적으로 표시하려는 기술적 동기를 가지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 4) 선행발명 1에서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를 표시할 때 시간 차이를 두고 통상적인 QR코드 복호화 방식(디코딩 방식)으로 인식 가능한 2차원 코드를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변경하는 것은 통상적인 QR코드의 복호화 방식(디코딩 방식)으로는 인식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이차원 코드를 표시함으로써 보안성을 향상시킨다는 선행발명 1의 목적에도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 5)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면 종래기술은 통상적인 QR코드 판독방식(디코딩 방식)으로는 정보를 판독할 수 없도록 QR코드를 복수개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블록의 배치를 변경하고 데이터 영역을 암호화한 새로운 QR코드를 생성하여 배포하고,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의 판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QR코드의 보안성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으나, 이러한 종래기술은 전용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여 사용자의 이용이 불편한 문제점이 있었으며, 출원발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행발명 1, 2 역시 고유한 암호화 및 복호화 방식을 갖는다는 점에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종래기술에 해당한다.
- 6) 이상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비록 선행발명 2에 n 개의 더미 코드(정상적인 형태의 결제용 코드로서 인식되지 않는 코드)와 인증에 필요한 2D 코드(정상적인 결제용 코드로서 인식되는 코드)를 동적으로 표시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선행발명 1에 결합할 기술적 동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합은 선행발명 1의 목적에 반할 뿐만 아니라 선행발명 1의 기술적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의 위와 같은 구성을 쉽게 결합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7) 더욱이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에 개시된 n 개의 더미 코드와 인증에 필요한 2D 코드를 T 주기로 디스플레이하여 번갈아 출력하는 구성을 결합하더라도 1항 출원발명의 “일시적으로 블록들을 정상적으로 배치”를 통해 통상적인 결제용 코드 리더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구성은 도출되기 어렵다고 봄이 타당하다.

키워드: 특허, 거절결정, 보안 기능이 강화된 결제용 코드의 동적 표시 방법, 이차원 코드의 암호화 방법, 디스플레이 기반의 동적 2D 코드 인증 방법, 인증 시스템, 사용자 단말기, 인증 서버, 진보성 인정

사건번호	2022 허 2233	사건명	거절결정(상)
심판번호	2021 원 1496	심판결과	기각
원고	심판청구인	피고	특허청장
권리유형	상표	권리명칭	
선고일	2022. 10. 20.	선고결과	기각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 33 조 제 1 항 제 6 호에 해당하므로, 제 33 조 제 1 항 제 7 호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본 사례

● 사건 개요

특허청은 출원인인 원고에게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의 거절이유가 적시된 의결제출통지를 하였고, 그 후 2021. 3. 12.자 의견서 및 보정서에 의하더라도 위 거절이유 중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원상표에 대하여 등록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같은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 판시 요지

다음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

- 1) 일반적으로 컴퓨터키보드의 숫자 6키 위에 표시되어 있는 삿갓 모양의 기호 '^'(특수문자의 한 종류로서 '삿갓표' 혹은 '캐럿(caret) 기호'라 불린다)두 개를 연달아 나열한 '^ ^'는 웃는 얼굴을 표현한 이모티콘으로서 모바일 메시지를 활용한 대화 등에서 자주 사용된다.
- 2) 그런데 '^ ^'는 심결일 당시 국내에서 인터넷 기호언어를 넘어 여행사의 로고, 단체 티셔츠 디자인, 반지 디자인, 시험문제의 예문 등에 쓰이면서 생활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게 되었다.



- 3) 출원상표 "  "는 수평으로 나열된 '  ' 2개가 결합한 표장이다. 그런데 '  ' 부분이 선의 두께가 다소 굵게 표현되어 있기는 하나, 삿갓표 '^'의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배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상단부만을 차지하는 '^ ^'와 달리 중앙부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러한 차이는 미세한 것에 불과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 ^'으로 인식되는 데 장애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 ^'가 가지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4)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의 하단에 영문자 'mandom'을 결합한 실사용표장 '^^ mandom'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출원상표 자체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 이상의 의미로 인식되거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부터 특별한 주의를 끌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출원상표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로 직감되는 사정에다가, 웃는 모습의 이모티콘 '^^'가 일상 속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거래 실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특정인이 독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키워드: 상표, 거절결정, ^^, 이모티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인정, 상표법 제 33 조 제 1 항 제 6 호